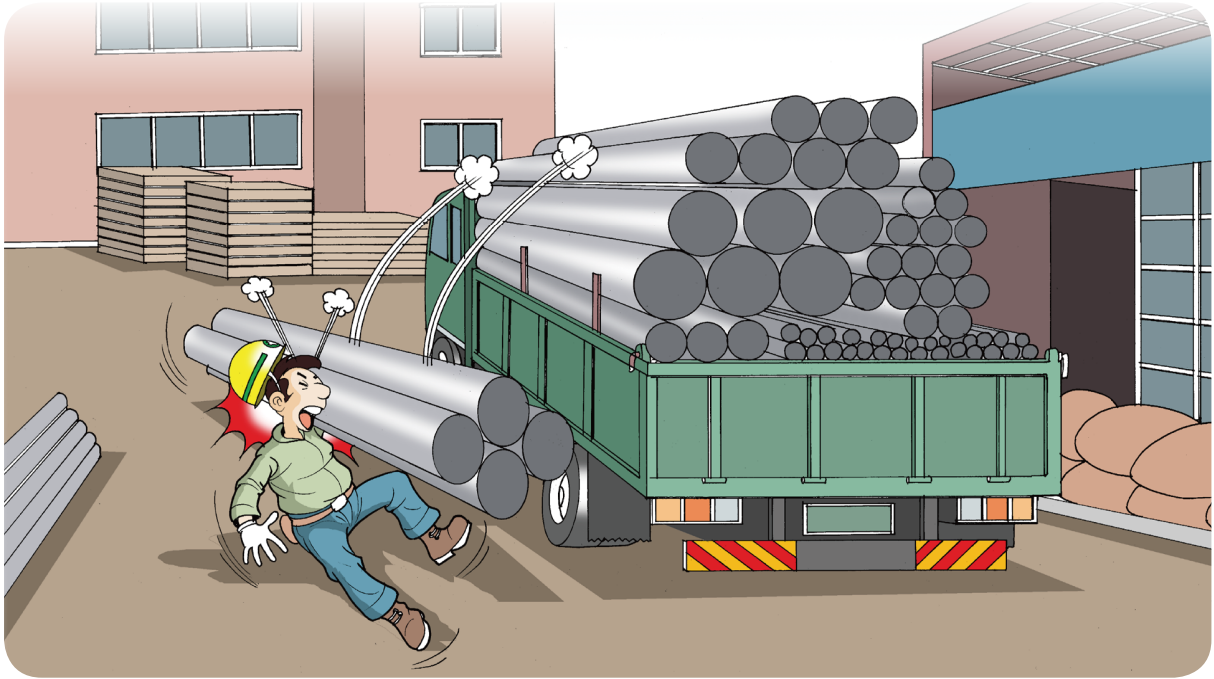




# 화물자동차에서 떨어진 배관파이프에 맞음



-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가 하역준비 중인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불안전하게 있던 배관파이프 1묶음(총 중량 약 381kg)이 떨어져 파이프에 맞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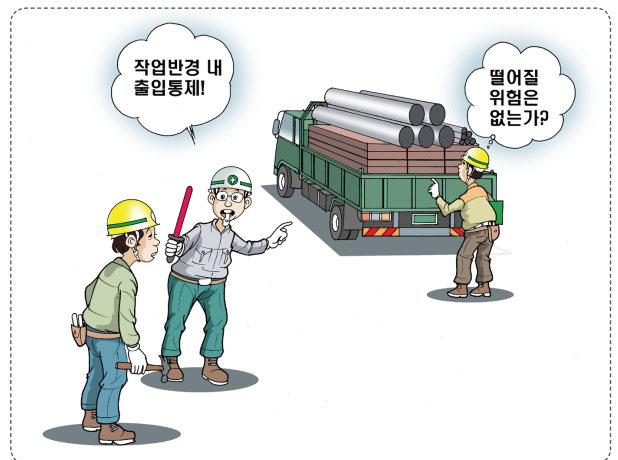
## 재해발생 원인

- 화물자동차 주변에 출입금지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의 로프를 풀어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지나가던 작업자에게 떨어짐



## 재해예방 대책

- 로프 풀기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
  - »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
  - » 로프 풀기 작업 전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을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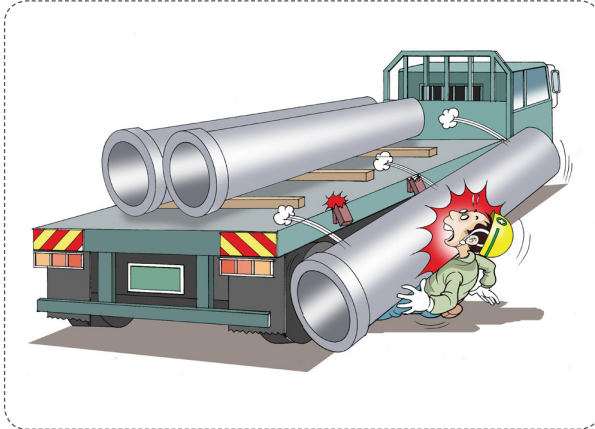


참고법령 및 기준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

# 자재 하역작업 시 안전작업

## 핵심 위험요인

- ▶ 건설현장에서 자재 하역작업 중 ① 적재용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배관·파일 등이 굴러 깔림, ② 배관·파일 등 적재 시 구름방지용 받침목 미설치로 파일이 굴러 넘어져 깔림, ③ 배관·파일 등 과적재로 인한 무너짐 및 굴러 넘어져 깔림, ④ 지게차 자재 하역 운반 중 불안정한 과적재로 떨어짐, ⑤ 지게차 후진 중 부딪힘 등의 위험요인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



## 핵심 안전작업

- ▶ 자재 적재 시 받침목 상태 확인 및 적정 높이로 적재
- ▶ 지게차의 포크 등이 적재함의 배관·파일 등을 접촉, 충격이 작용하여도 구름이 방지되도록 썬기를 4개소 이상 견고하게 설치
- ▶ 자재 적재 시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, 불안정한 높이로 적재 금지,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정돈하여 적재
- ▶ 지게차 작업 시 ① 후면에 접근금지 시설 설치, ② 작업구역 출입금지 조치, ③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 실시, ④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
- ▶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

